

등 록 번 호

여성인권-단행본-2023-009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목적] 본 안내서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와 법령을 담아 피해자 지원기관이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구성] 본 안내서는 1. 교제폭력의 이해, 2. 교제폭력 사례, 3.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 4.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 본 안내서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서울 특별시·한국여성의전화(2018). F언니의 두 번째 상담실: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2022).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여성 가족부(2023).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2023). 스톱킹방지법 시행 안내서」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인용] 본 자료 인용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발 행 인 신보라

편집·집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2023년 9월

발 행 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연 락 처 02-735-1050 / FAX 02-6363-8493

문서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23-009

등 록 번 호

여성인권-단행본-2023-009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Contents

I. 교제폭력의 이해	3
1. 교제폭력의 정의	4
2. 교제폭력의 특성	5
3. 교제폭력의 피해 유형	6
4. 교제폭력의 실태	8
II. 교제폭력 사례	9
1. 정서적 폭력·통제 사례	10
2. 경제적 폭력·통제 사례	11
3. 신체적 폭력 사례	12
4. 성폭력 사례	13
III.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	14
IV.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일부)	17
1. 형법	19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22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2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23
5. 경범죄처벌법	24

I



교제폭력의 이해

1. 교제폭력의 정의
2. 교제폭력의 특성
3. 교제폭력의 피해 유형
4. 교제폭력의 실태

1 | 교제폭력의 정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제3조(정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¹⁾

예를 들어 행동에 제약을 가하며 감시와 통제, 폭언과 욕설,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 그 밖에 정신적 괴롭힘, 갈취, 강제추행, 강간, 폭행, 주거침입,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입니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²⁾

1) 출처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 출처 : 서울특별시·한국여성의전화(2018). F언니의 두 번째 상담실: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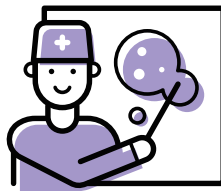
2 | 교제폭력의 특성

교제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의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관계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소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많이 알고 있어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성상 교제폭력은 ‘사랑싸움’ 등으로 ‘사소화’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2023년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이 부재하므로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³⁾



3) 참고 : 본 안내서 IV.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법(일부) p17

3 | 교제폭력의 피해 유형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여성폭력 피해 유형에 맞추어 신체적·성적·정서적·통제·경제적 폭력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피해 유형	구체적인 내용 ⁴⁾
신체적 폭력	• 몸을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밀치거나 힘껏 떠미는 행위 • 머리카락을 움켜잡거나, 당기는 행위 •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행위 • 주먹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거나, 끌고 다니는 행위 • 화상을 입히는 행위 •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폭력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키스, 포옹, 껴안기 등) •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강압적인 성관계
정서적 폭력	• 면박주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 폭언을 쏟아붓는 행위 •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겁주는 행위 • 겁주기 위해 내가 아끼는 동물, 물건, 사람(자녀 포함) 등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4) 피해 유형별 내용은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함.

피해 유형	구체적인 내용 ⁴⁾
통제	• 친구를 만난 것을 금지하는 행위 •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제하는 행위 • 어디에 있는지를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행위 •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행위 • 나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 외출하는 것을 막거나 집에 감금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 내 몫이 있는 수입, 저축 등 금융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주택, 자동차 등 부동산 및 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위자료, 양육비, 생활비 지급 등의 책임을 회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위 •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물건의 구입과 처분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강제로 빚을 지게 하거나,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



4 | 교제폭력의 실태⁵⁾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2,446명(34.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당시 사귀고 있는 사람이거나 과거 사귀었지만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성적·정서적·통제·경제적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은 14.3% (350명)에 해당합니다.

교제폭력의 경우, 성적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37.8%), 정서적 폭력(36.4%), 통제(26.1%), 경제적 폭력(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여성폭력 유형별 평생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경험별	2021			
	전체 여성폭력		데이트폭력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신체적 폭력	995	40.7	132	37.8
성적 폭력	1,316	53.8	151	43.2
정서적 폭력	1,500	61.3	127	36.4
통제	333	13.6	91	26.1
경제적 폭력	153	6.3	7	2.1
계	2,446		350	

※ 중복응답 포함

5) 출처 : 여성가족부(2022).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II



교제폭력 사례

1. 정서적 폭력·통제 사례
2. 경제적 폭력·통제 사례
3. 신체적 폭력 사례
4. 성폭력 사례

1. 정서적 폭력·통제 사례



연애 초기부터 애인은 저의 옷차림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 둘이 가는지, 꼭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지 등 간섭이 심했습니다. 애인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무섭게 변하기도 했지만, 애인의 관심이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동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피했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다 보니 애인 말고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애인의 관심과 간섭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 유형에서 정서적 폭력, 통제**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교제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애인을 통제하고 그래서 애인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켜 버리는 것 또한 교제폭력입니다.**

지원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위 상황이 교제폭력임을 인지하고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 경제적 폭력·통제 사례



애인과 동거하며 생활비 등을 각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인이 생활비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 소비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사소한 지출에도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제 신용카드를 빼앗는 등 도를 넘는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애인은 저를 돈 헤프게 쓰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100원 단위까지 카드 사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씩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돈 관리를 못 하니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저는 점점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지면서 고립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작 애인은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소비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 이 관계를 끊고 싶는데 경제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매번 불같이 화를 내는 애인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 유형에서 경제적 폭력, 통제**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금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 이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점에서 명백한 교제폭력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은 단순히 소비방식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비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는 **경제적 폭력도 교제폭력임을 피해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시에는 일반적으로 연인 간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보통 증여로 보고 ‘대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사진, 결제명세 등과 함께 **‘돈을 빌려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3. 신체적 폭력 사례



헤어진 애인이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①②} 사실 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이 몇 번이나 이어져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면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애인은 제 핸드폰과 지갑 좀 보여달라고 하더니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을 가는 척을 하고 옆 가게로 들어가 핸드폰을 빌려 친구에게 설명 후 몰래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애인에게 들켰습니다. 애인은 저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집으로 데리고 가 가둬놓고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③ 다행히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애인은 그사이 도망쳤습니다. 결국 경찰한테 붙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의 유형에서 신체적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복합피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애인의 협박이나 헤어진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불안, 무서움 등으로 관계를 단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지원기관에서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심리 등의 지원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의 결정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① 스토킹 처벌법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③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성폭력 사례



애인 관계였던 친구에게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이별을 통보한 며칠 후 집 앞에 애인의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❶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옷과 생필품을 가지러 집에 다시 들렀는데 집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며 집으로 들어갔더니 애인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❷ 저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 저를 본 애인은 언성을 높이며 왜 연락을 받지 않는지, 본인은 이별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더니 계속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제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저의 팔을 잡은 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복합피해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어난 성적 침해는 성폭력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는 교제폭력과 함께 스토킹, 성폭력이라는 복합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❶ 스토킹 처벌법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❷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❸ 형법 제297조 강간(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I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⁶⁾

교제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여러 유형의 폭력이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교제폭력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중복피해가 있다면 주 호소 내용에 따라 관련 피해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상담할 때 다른 피해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지원기관
상담	• 교제폭력 피해 신고 및 이에 관한 상담 • 피해자가 겪는 불안·두려움 등에 관한 상담 지원 및 지원 가능한 제도 안내	교제폭력 피해 시 지원 가능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포함), 이주여성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법률	•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와 관련한 형사·민사·가사 소송 등을 무료로 법률 구조 지원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포함), 이주여성상담소 해바라기센터 ※ 사업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긴급 보호 (긴급 피난처)	•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히 숙식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최대 7일까지 임시보호가 가능하지만,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 가능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입소	• 교제폭력 피해자 숙식 제공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 비공개 운영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가능		성폭력·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

6) 출처 : 여성가족부(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지원기관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교제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제폭력 피해 시 지원 가능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포함) 및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주거 지원	•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가능한 임시거소(원룸·오피스텔 등) 지원(7일 이내, 최대 30일) • LH 임대주택 주거지원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 훈련	• 이주여성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센터 제공 및 자활지원센터 이용을 통한 훈련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의료	•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가정폭력 의료비 기준에 준하여 지원 가능 (단, 성폭력과 복합된 피해에 해당할 경우 성폭력의료비 기준에 준하여 지원 가능)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포함), 이주여성상담소, 해바라기센터



IV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일부)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5. 경범죄처벌법

교제폭력의 처벌에 대한 단독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폭력 피해 발생 시 각 행위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감금, 성폭력, 스토킹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처벌 가능 규정
강간 및 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상해 및 폭행, 강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324조(강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감금, 납치, 주거침입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공갈, 재물손괴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침입행위,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불법정보 유통금지,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9호(불안감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지속적 괴롭힘)

1. 형법

- 강간 및 추행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 및 폭행, 강요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감금, 납치, 주거침입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갈, 재물손괴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후략>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후략>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후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후략>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 불법음란정보 유통, 공포심·불안감 유발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후략>
----------------------	--

5. 경범죄처벌법

-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 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중략)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 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